#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18 발의연월일: 2021. 4. 6.

발 의 자: 류호정·심상정·김홍걸

이은주 · 배진교 · 장혜영

이상헌 · 강민정 · 강은미

전용기 · 장경태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교육,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지속적이지 않거나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로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학급교체, 교육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학교폭력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피해학생, 신고학생 외에 학교의 여러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 지속적·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 법률 제 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보복행위"를 "보복행위(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
- 2.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 지속적·고 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	
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	
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	
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u>.</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2
에 대한 접촉, 협박 및 <u>보복</u>	<u>보복</u>
<u>행위</u> 의 금지	행위(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
	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u> 포함한다)</u>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2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 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 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 을 가중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 ② (생 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_	

- 1.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
- 2.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지속적·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
- ③ ~ ⑫ (현행과 같음)